

[전직금지쟁점] 영업비밀보호 전직금지약정과 전직금지기간 판단기준 및 판결 사례

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. 19.자 2010카합2402 결정

신청인 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연구센터에 소속되어 실험실 장치의 운영 및 LFP 합성 관련 연구업무 등에 종사하던 피신청인이 경쟁업체에 입사한 사건에서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은 인정되나 퇴직일로부터 **1년**으로 제한함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0. 5. 25.자 2010카합188 결정

의약품류의 연구, 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던 신청인이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건에서 **1년**의 전직금지기간을 인정함

광주지방법원 2010. 3. 12.자 2010카합144 결정

LED에 관한 연구,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던 채무자가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건에서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**1년**의 전직금지기간을 인정함

수원지방법원 2010. 1. 12.자 2009카합455 결정

LED 제조기술을 개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채무자가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건에서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**1년**의 전직금지기간을 인정함

서울고등법원 2010. 1. 26.자 2009라610 결정

폴리실리콘 제조기술의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던 채무자들이 전직한 사건에서 전직금지약정상 **3년**의 전직금지약정을 **1년**으로 제한함

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. 5.자 2008카합3878 결정

반도체 및 LCD 제조장비 세정, 코팅 및 재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피신청인이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건에서, **1년**의 전직금지기간을 인정함

대전지방법원 2009. 4. 27.자 2009카합288 결정

폴리올레핀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던 피신청인이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건에서, 전직금지약정상 **2년**의 전직금지약정을 **1년**으로 제한함

경업금지, 전직금지, 영업금지, 영업비밀, 형사고소, 민사소송,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